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32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연 사무명: 서울연구원 출연
-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4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도시재생, 도시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다. 출연 사무내용

-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 라. 출연 기관 개요

### 1) 연 혁

- '92. 1.15: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공포

- '92. 10.1: 시정개발연구원 개원(강남구 논현동)

- '03. 1.27: 현 청사(서초구 서초동) 이전

- '12. 7.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14. 10.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로 제명 및 일부개정

2)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3) 위치도



#### 4) 규 모

- 조 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1본부, 6연구실, 3센터
  - ▶ 감사실, 기획조정본부,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안전환경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센터, 도시외교연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인 력 : 정원 225명 / 현원 220명

(2019. 7. 31. 현재, 단위: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정원	225	1	148	35	25	16
현원	220	1	145	34	24	16
과부족	△5	-	△3	△1	△1	-

#### 5) 지원시설

- 규 모: 지상5층, 지하1층 / 연면적 8,467.83m<sup>2</sup>
- 건축년도: 2003년
- 시설현황

층별	주요 용도
지하1층	정보자료실, 공동연구실, 중회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전기기계실
1층	도시정보센터, 도시사회연구실, 공용전산작업실, 기기조정실
2층	원장실, 감사실, 기획조정본부,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3층	도시공간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도시외교연구센터
4층	안전환경연구실, 여성휴게실
5층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20년 출연금 편성액(안): 35,863백만원 ※ '19.7월말 현재
- 2) '20년 산출근거(안)

(단위: 백만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44,710		계	44,710		
1. 서울시 출연금	35,863	80.2%	1. 연구사업비	12,146	27.2%	
			연구과제	11,937	26.7%	
2. 자체수입	8,847	19.8%	연구사업운영	209	0.5%	
	수탁사업비	7,800	17.4%	2. 경영사업비	6,333	14.2%
	출판물판매수입	30	0.1%	3. 인건비	20,145	45.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250	0.6%	4. 예비비	236	0.5%
	이월금	767	1.7%	5. 수탁연구비	5,850	13.1%

바. 이사회 회의록: 붙임 1

사. 결산 보고서: 붙임 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4)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유 진 (☎ 2133-6747)